/ 전송 031)249-3529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(도청앞길 / 전화 031)249-4262 담당자 유승호 **3보통신망** 담당 봉 만 종 과장 박 효 갑 지 리과 환경자원과 1818/M 入 소장 근서번호 환자67510-17 2 2% 담당 2003.01.06 ( 1년 일자 시행일자 2003.01.06 오후 05:40 시간 결ス 공개여부 공개 35 버호 공로 환경사업소 1003 처리과 직원 경기도 안성시 담당자 수신 심사일 환경사업소장

폐기물 처리(매립장)시설 사용종료신고 수리 제목

참조

1. 안성시 환사 67436 - 1077('02.12.16), 67436 - 1('03.1.2)호와 관련입니다.

심사자

- 2. 귀 시 양성면 장서리 산 58-5번지 일원의 폐기물 처리(매립장)시설 사용종료신고에 「페기물관리법」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종료신고 수리하오니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사 후관리 기준 및 방법 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피해가
- 3. 아울러 우리도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맞게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「사용종료매립지 활용 테마파크조성계획」을 수립, 경 기도 환자 67510 - 11675(`02.10.21)호로 시달하였으니 동 계획에 따라 사업비(도비 50%지원), 사업내용,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수립 2003.1.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사후관리시 조치할 사항 1 부. 끝.

경기도

전결 환경자원과장

134

#### 98

# 안성시(양성)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 검토

#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·사용내역

) 시설 설치내역

- 위 치 :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 58-5번지 일원

- 부지면적 : 37,131 mg

- 매립면적 : 20,000 m<sup>\*</sup>

- 매립방법 : 준호기성 매립

| ○ 폐기물처리시      | 설 설치승인니 | 내역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| 처리시설    | 규격(능력)<br>매립용량 | 첫 리 대 <sup>상</sup><br>폐기물 <sup>종류</sup> | 처리에상량<br>(톤/년) | 방지시설명  |
| 처리시설명         | (㎡)     | (1111)         | 생활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,800         | 침출수처리장 |
| 매립시설<br>(관리형) | 20,000  | 321,773        | 0==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0 | ) 폐기물처리 | 되기시설 - | 규격(능력)  | ラハロー・      | VIO VIVO   | 예정될      | 비고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  | 처리시설명   | 매립면적   | (117)   | (01217=    | 01         | - 000 10 | 사용기간<br>: 8년 |   |
|   | 위생      | 20,000 | 310.000 | '93. 9. 28 | 195. T. Z. |          |              | _ |
| 0 | 매립시설    |        | - 이스터   | 미(아성 제2선   | 난업단시 페기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

- 침출수 처리 : 1차처리후 이송처리(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)

- 관리시설, 차수시설, 가스포집공, 우수배제시설, 지하수검사정, 침출수처리시설 등 설치 ○ 부대시설 설치내역

#### □ 사후관리 추진계획

#### ○ 사후관리기간

최종복토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매립폐기물내 잔존 침출수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후관리기간은 20년으로 계획.

#### ○ 사후관리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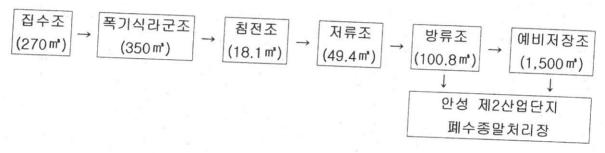
| ÷     | E            |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| 3년 | 5년 | 10년 | 종료결정 | ण च.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하수질  | 월 1회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7079  | 분기 1회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발생가스  | 분기 1회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¥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| 연 1회         |              | 2 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구조물 및 | _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지반안정도 | 연 2회         |              | - 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주변환경  | -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5 |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 오염도   | 분기 1회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12월~2월:        |
| 하     | <del>-</del>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필요시            |
| 0 1   | 월 1회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|      | 6월~9월:<br>주 1회 |

#### ○ 빗물배제계획

매립시설 상부 차수계획은 현재 매립층 상부를 정지한 후 법적기준에 맞도록 최종복토층 1.5 m(향후 토지이용계획시 식생대층을 고려)를 계획하고, 매립구역내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우수배제시설 상부의 최종복토층 구배를 2% 이상 유지하여 신속히 배제되도록 계획하며, 매립지 상부의 외곽배수를 위한 측구 및 제방 사면부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시원활한 우수배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함.

### ○ 침출수 관리계획

- o 2001년 기준 매립장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일 평균 21.2㎡/일, 일 최대 49.5㎡/일이나, 향후 최종복토가 진행되면, 유출량 감소로 인하여 일 평균 3.6 ~ 7.1㎡/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일 최대 발생량은 24.7 ~ 49.5㎡/일이 될 것으로 추정
- o 침출수처리는 1차 처리 후 안성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할 계획임 - 침출수 처리공정 :



## ○ 지하수 수질조사계획

- o 기 설치된 지하수검사정 3개소(상류 1, 하류 2개소)를 이용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동 규정 별표2에 의하여 조사하며
- o 조사주기는 매립종료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, 그 이후는 분기 1회 이상 조사하는 것 으로 계획

### ○ 발생가스 관리계획

- 0 매립가스 조사계획
  - 가. 발생가스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
    - 발생가스 조사항목 : 외기온도, 가스온도, CH<sub>4</sub>, CO<sub>2</sub>, O<sub>2</sub>, N<sub>2</sub>, NH<sub>3</sub>, H<sub>2</sub>S, NO<sub>X</sub>
    - 발생가스 조사주기 : 매립종료후 5년까지는 분기 1회이상, 5년 경과이후에는 년 1회이상
  - 조사방법 : 일시적으로 간이소각기를 소화 후 조사토록 함

#### 나. 발생가스 처리계획

최종복토에 가스배제층을 포설하며, 가스배제층내 수평유공관을 설치하여 가스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토록 하고, 유공관들은 매립장 상부 3개소에 연결된 수직 가스추출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계획하며, 가스는 간이소각시설에 의해 소각처리토록 계획함

- 가스회수방법 : 기존 수직배출관에 수평 가스포집관을 연결하여 상부 3개소로 포집
- 가스처리/환기방법 : 수평 및 수직포집 후 3개소의 간이소각시설에 의해서 소각처리

#### ○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

0 저류구조물의 안정도 유지계획

저류구조물의 설계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시 미처 예견치 못했던 외력이 작용하여 변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

저류구조물의 변위는 초기에 발견하여 설계이상의 외력이 작용할시는 설계조건과 현재의 조건을 항상 비교하면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성상, 매립지내 수위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계획임.

#### 0 지반의 안정도 유지계획

매립층의 침하정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최종복토층 위에 13개소의 지표항을 설치할 계획 이며, 제방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E.L Beam Sensor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

#### o 최종복토계획

- ㅇ 평지부 :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
  - 식생대층 (60cm)
  - 배수층 (모래, 30cm)
  - 차수층 (H.D.P.E SHEET T=1.5m/m) + 부직포 (1000g/㎡)
  - 차수층 (벤토나이트혼합, 30cm)
  - 가스배제층 (잡석, 30cm)
- 제방사면부 : 사면구배로 인해 가스배제층, 배수층의 유지가 어렵고 H.D.P.E SHEET에 의한 슬라이딩이 예상되어 식생대층(60㎝)와 H.D.P.E SHEET 대신 벤토나이트 매트(6㎜)로 계획

# ○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

0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계획

#### 가. 수 질

- 1) 지표수 오염도
  - 조사방법 및 주기

매립시설 하류 2개지점 선정, 분기 1회이상 측정 조사함.

- 조사항목
- "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질 (하천)환경기준항목"
- 2) 지하수 오염도
- 조사방법 및 주기

기존의 지하수검사정 3개소, 분기 1회이상 측정 조사함.

- 조사항목

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기준항목"

#### 나. 토양

- 조사방법 및 주기

매립시설 인근지역의 4개 지점을 선정, 분기 1회이상 측정 조사함.

- 조사항목
- "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항목"

#### 다. 대기오염도

- 조사방법 및 주기

매립시설 인근지역의 4개 지점을 선정, 분기 1회이상 측정 조사함.

- 조사항목
- "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대기환경기준항목"

#### ○ 방역방법

o 매립장의 위생학적 관리를 위하여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, 방역주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되, 동절기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,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이상 실시

#### ○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 작성

o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사용종료신고 후 매 5년마다 작성할 계획임

#### ○ 향후 토지이용계획

- o 양성매립장은 계곡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, 진입로 측에 양계장 및 농경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하 및 매립상부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, 잔디 등의 초지류 등을 식재토록 하며,
- 안정화가 완료된 후에는 제방 사면부에는 소단을 산책도로로 활용하여 야생화단지로 조성하도록 하며, 매립장 상부 평지부에는 파고라 등 휴식공간과 소규모 축구장 시설 등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본 양성매립장이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놀이문화 공간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.

#### □ 검토의견

- 안성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해 왔던 매립장의 사용용량이 한계가 도래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종료를 신고한 사안으로써
-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, 주변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 는바
- 사후관리시 조치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수리코자 합니다.

## 사후 관리시 조치사항

- 지하수, 침출수, 토양오염도, 가스처리 등 사후관리는 귀 시에서 계획한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(별표 14)을 철저히 이행할 것
- 고 %가. 이 .

  아용이 종료된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날로부터 20년간 토지이용을 공원, 수목의식재,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・시행하기 바람.
- 적정 규모의 가스포집관을 설치하여 대기확산, 소각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하여 사고가(화재나 폭발 등)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매립시설 제방, 옹벽 등은 주기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유지 하여야 함
-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후 5년마다 작성하여야함.